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 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 마련〉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89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7. 10.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명시적인 반납 규정이 없어 그 주차표지 소지자가 반납 의무를 인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 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한 관청이 해당 주차표지의 반납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 정도 조정 결과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주차표지 발급기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표지의 반납을 명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 기간 내 표지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7조제1항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표지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되, 최소한 14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u>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 결과

<신 설>

④ ~ ⑥ (생 략)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주차표지 반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⑨ -----

-----제7항-----

-----.

제27조(과태료)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반납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7조제7항-----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6항-----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동차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
표지’라 함)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현행법 제17조제2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현
행법 제1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은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발급
신청 절차(시행령 제7조의3)를 규정하는 한편,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
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
우의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8조),

- 시행규칙에서는 주차표지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
고 있음(시행규칙 제6조의2).(참고자료 1: 관련 법령)

□ 그러나 현행법령은 주차표지의 양도·대여나 부정 사용 등에 대한 회수 및 재발급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 정도의 조정이나 장애인등록 취소 등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표지의 반납을 명하거나, 반납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에서는 주차표지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주요 기재사항 훼손,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차량등록 말소 또는 차량번호 변경 등을 주차표지의 반납 사유로 정하고,
-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기관에 표지를 반납하도록 반납처와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 보호자 명의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차표지를 회수·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이에 개정안은 장애 정도의 조정이나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반납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상실자가 주차표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담 이용을 줄이는 동시에 발급 자격이 있는 사람의 주차공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보건복지부, (2026).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 첫째, 개정안은 장애 정도 조정 결과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주차표지의 반납을 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납 명령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음.

반납 명령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통지 방법, 반납 방법 및 반납된 표지의 처리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17조제9항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 절차와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 · 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 ----- ----- 제7항----- -----.

□ 둘째, 개정안은 주차표지의 반납 기간을 14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이 반납에 필요한 현실적인 시간과 발급 자격 상실 후 주차표지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적절하게 고려한 기간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은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반납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지만, 반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에 관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다른 위반행위의 과태료 수준과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 주차를 방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²⁾

□ 넷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 전에 이미 장애 정도 조정이나 장애인등록 취소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두고 있지 않은데,

시행 전에 이미 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에 따른 반납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 주차표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반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취지에는 공감함.
- ☐ 다만, 표지 반납기간, 방법 및 절차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하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에는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③ 별표 2의4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4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해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한다.

1.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 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